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 알림

- 1.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2. 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제15조제2항 및 별표 5의2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을 규정하고 있으나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(국토교통부 령 제717호, 2020.4.17.)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(2020.4.18.) 당시 건축 물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간주하여 '26.4.17.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3. 다만, 부칙 제2조제2항 중 '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'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질의 및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, 소속·산하기관, 기초자치단체(시·군·구) 및 회원사 등을 통해 관리주체에게 전파되어 원활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질의요지

○ 「기계설비법 시행규칙」부칙(국토교통부령 제717호, 2020.4.17.) 제2조제2항 중 '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'이 같은 조 제1항 중 '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'에 해당되는지 여부

나. 회신내용

-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,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'해당 건축 물등'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,
- 부칙 제2조제2항 중 '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'은 규칙 시행 당시('20.4.18.)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(「건축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) 및 규모(연면적 및 세대수)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.
- 예를 들어, 20.4.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.6만㎡인 건축물에서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.5만㎡ 이상 3만㎡미만 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,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인쇄: 김동은 / 건설정책과 (2022-03-31 08:29:54)

국토교통부장관

수신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,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,교육부장관,국방부장관,기획재정부장관,문화체육관광부장 관,법무부장관,통일부장관,농림축산식품부장관,외교부장관,행정안전부장관,산업통상자원부장관,보건복지 부장관,환경부장관,고용노동부장관,국세청장,여성가족부장관,해양수산부장관,중소벤처기업부장관,산림청 장,소방청장,조달청장,새만금개발청장,통계청장,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,질병관리청장,특허청장,서울특 별시장,부산광역시장,대구광역시장,인천광역시장,광주광역시장,대전광역시장,울산광역시장,강원도지사,충 청북도지사,충청남도지사,경기도지사,전라북도지사,전라남도지사,경상북도지사,경상남도지사,제주특별자 치도지사.세종특별자치시장.서울특별시교육감.부산광역시교육감.대구광역시교육감.인천광역시교육감.광 주광역시교육감,대전광역시교육감,울산광역시교육감,경기도교육감,강원도교육감,충청북도교육감,충청남 도교육감,전라북도교육감,전라남도교육감,경상북도교육감,경상남도교육감,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,세종특 별자치시교육감,국토정책과장,도시정책과장,건축정책과장,주택정책과장,토지정책과장,주거복지정책과장, 국토정보정책과장,건설정책과장,상황총괄대응과장,교통정책총괄과장,물류정책과장,자동차정책과장,항공 정책과장,항공안전정책과장,공항정책과장,도로정책과장,철도정책과장,공공택지기획과장,도시재생정책과 장,건축혁신기획팀장,기획총괄과장,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,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,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,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,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,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,서울지방항공 청장,부산지방항공청장,제주지방항공청장,국토지리정보원장,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(기획총괄과 장),항공교통본부장(운영지원과장),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,한국도로공사사장,국가철도공단이사장,한국공 항공사 사장,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,대한건설협회,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,한국엔지니어링협회,한국주 택협회장,대한주택건설협회_중앙회,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,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,(재)건설산업정보센 터,(재)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,대한건축사협회,한국건설기술인협회,대한설비공학회,사단법인 대한설비 설계협회,대한주택관리사협회

주무관 이상민 공업사무관 이광우 건설산업과장 **연결 2022.** 3. 29.

협조자

시행 건설산업과-2544 (2022. 3. 29.) 접수 건설정책과-4617 (2022. 3. 29.)

위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정부세종청사 6동 / http://www.molit.go.kr

전화번호 044-201-3540 팩스번호 044-201-5547 / windcoolv@molit.go.kr / 대국민 공개

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